



시 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377호 2019. 3. 11.(월)

공 고

- 목포시 감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2
- 「목포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7
- 목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24

회람							
----	--	--	--	--	--	--	--

목포시 공고 제2019-325호

입 법 예 고

『목포시 감사 규칙』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1일

목 포 시 장

1.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의회 예산집행의 사후관리 강화 방안”을 의결하고 (2018. 03. 26)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2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도개선 권고사항 으로 「목포시 감사 규칙」의 감사대상기관에 의회사무국이 포함 되도록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의회사무기구를 감사대상기관에 포함(규칙 제2조 제1항)
 - 목포시(이하 “시”라고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사무국, 동 행정복지센터**

3. 개정 규칙안 : 별첨

4.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적용범위)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소속부서(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 및 사업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관하여 다른 법령과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적용범위)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소속부서(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 및 사업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관하여 다른 법령과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목포시(이하 “시”라고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동	1. 목포시(이하 “시”라고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사무국, 동 행정복지센터

5. 관계 법령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6. 관련부서 의견

-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7. 규제심사(심의)대상여부 검토 : 해당없음

8. 예산 상황 : 별도 예산조치 필요 없음

9. 입법 예고 : 2019. 3. 11. ~ 4. 1.(21일간)

10. 사전협의(승인) 사항 : 없음

11. 의견제출 ※ 의견제출서 별도 첨부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목포시장(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처 : 58613, 목포시 양을로 203 목포시청(감사실)
- 제출방법 : 우편, 팩스(061-270-3575), 직접방문 등

12. 기타사항

이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http://www.mokpo.go.kr>) 입법 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목포시청 감사실(☎ 061-270-321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목포시 규칙 제 호

목포시 감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목포시 감사규칙에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동”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 사무국,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적용범위)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소속부서(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 및 사업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관하여 다른 법령과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목포시(이하 "시"라고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동	제2조(적용범위)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소속부서(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 및 사업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관하여 다른 법령과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목포시(이하 "시"라고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사무국, 동 행정복지센터 2. (현행과 같음)

의 건 제 출 서

규 칙 명	목포시 감사규칙		
의 건 제 출 자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 소		
조 례 안 조 문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목포시 감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9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목포시장 귀하

목포시 공고 제2019-326호

입 법 예 고

「목포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 및 관계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1일

목 포 시 장

1. 개정이유

- 일상의 행복을 해치는 생활적폐청산 차원에서 공공분야 갑질을 근절할 갑질근절 및 「공공기관 해외출장 지원실태 점검관련 후속조치 및 향후 계획」의 이행으로 부당한 해외출장 지원요구 대응 가이드라인을 마련·보급한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되어 그 내용을 반영하고 새로 도입되는 제도들이 공직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시에 지원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 (안 제5조)

- 사적 이해관계 신고 의무 부과 및 신고 대상 구체화
- 사적 이해관계 신고 대상 중 특수관계사업자 범위 제시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안 제5조의4)

- 시장, 계약업무 담당자, 산하기관 담당자 본인 또는 가족 등이 소속기관 또는 산하기관과 수의계약 체결하는 행위 금지

다. 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 (안 제5조의5)

- 퇴직자 사적 접촉 시 신고해야 하는 접촉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예시

라.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안 제19조의3)

- 갑질의 개념, 갑질 행위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금지

마.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안 제19조의4)

- 감독기관의 해외출장·행사·연수 등과 관련된 부당한 지원 요구, 과잉의견 제공 요구 금지 및 피감독기관의 거부조치 등 신설

바.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안 제19조5)

- 피감독기관 소속 공직자가 감독기관 소속 동무원으로부터 아래의 요구를 받고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같은 요구를 받은 경우, 그 사실을 피감독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알릴 때 사용하는 서식 마련

사. 행동강령 교육에 관한 사항 구체화(안 제30조)

- 금품수수 금지,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 등 공공기관의 장이 소속 공직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공직자 행동강령 교육 내용을 5개 항목으로 구체화

아.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안 제32조)

-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등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는 내용 6가지 신설

3. 개정 규칙안 : 별첨

4.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5. 관계 법령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무원 행동강령」,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6. 입법예고 : 2019. 3. 11. ~ 4. 1. (21일간, 초일 제외)

7. 의견제출

-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4월 1일 까지 목포시장(참고 : 감사실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니다

주소 : 목포시 양을로 203(용당동) 목포시 감사실, 전화문의 270-3217

-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규칙의 내용은 목포시 홈페이지(<http://www.mokpo.go.kr>)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칙명 : 목포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목포시 규칙 제 호

목포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목포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정하는”을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9조제1항에서 정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항의 제7호를 제11호로 하며, 같은 조 같은항에 제7호부터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퇴직공무원으로서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자
8.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9. 최근 2년 이내에 인·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10. 500만원 이상 금전거래가 있는 자

제5조의4제1항 중 “시장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가 시장이 소속된 기관이나 산하기관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된다.”를 “시장은 시와 시의 소속기관이나 산하기관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가 시와, 시의 소속기관이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로 한다.

제5조의5제1항 중 “골프,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하는 행위 등”을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조 같은항에 제1호부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골프를 함께하는 행위
2.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여행을 함께하는 행위
3.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사행성 오락을 함께하는 행위
4. 직무관련자인 퇴직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퇴직자가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 후원자 등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식사·음주 등의 향응을

함께 하는 행위

제1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2.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3.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제19조의4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4(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① 감독·감사·조사·평가를 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출장·행사·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감사·조사·평가를 받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피감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등의 제공 요구
 2.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의전의 요구
- ②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공직자는 그 이행을 거부해야 하며,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피감기관이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인 경우에는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감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보고를 받은 피감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실을 통지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 요구를 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9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5(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제19조의4제2항에 따라 피감기관 소속 공직자가 감독기관 소속 공직자로부터 반복하여 부당한 요구를 받고 그 사실을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알릴 때에는 별지 제6호의2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30조제3항은 제4항으로 하고 “있다.”를 “있고, 실시한 교육 결과를 기록·관리해야 한다.”으로 하며, 제3항은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 이권개입, 알선·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가 지켜야 할 사항
4.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직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2조를 제33조로 하고,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공무원은 알선·청탁,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품등의 수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등에 대하여 행동강령 위반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과과 상담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의2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6호의2 서식]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위(직급)		
요구자	성명		직위(직급)		
	소속				

요구받은 사항

부당한 요구로 판단한 이유

년

월

일

신 고 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① 1. ~ 5. (생략) 6.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의 주식·지분·자본 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 (이하“특수관계업자”라 한다)가 직 무관련자인 경우 <u><신 설></u>	제5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① 1. ~ 5. (현행과 같음) 6.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9조 제1항에서 정하는----- ----- ----- 7. 퇴직공무원으로서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자 8.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 관 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9. 최근 2년 이내에 인·허가, 계약 의 체결, 정책·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10. 500만원 이상 금전거래가 있는 자 11. (현행 7호와 같음)
7. 그 밖에 시장이 공정한 직무수행 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판단 하여 정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제5조의4(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제5조의4(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시장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가 시장이 소속된 기관이나 산하기관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의5(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인 소속 기관의 퇴직자(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하는 행위 등 사적 접촉을 하는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 설>

시장은 시와 시의 소속기관이나 산하기관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가 시와, 시의 소속기관이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의5(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

① -----

-----다음 각 호의-----

-----.

1.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골프를 함께하는 행위
2.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여행을 함께하는 행위
3.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사행성 오락을 함께하는 행위
4. 직무관련자인 퇴직자가 비용을 부담하는(퇴직자가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 후원자 등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식사·

<신 설>

음주 등의 향응을 함께하는 행위
제19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
당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
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
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
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
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
하는 행위
2.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
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3.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
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
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신 설>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
· 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
공무원,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
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
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제19조의4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
지) ① 감독·감사·조사·평가를
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감독기
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출장·행사·
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감사·
조사·평가를 받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피감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
품등의 제공 요구

2.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하
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
· 의전의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
은 피감기관 소속 공직자는 그 이
행을 거부해야 하며, 거부했음에

도 불구하고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피감기관이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인 경우에는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감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보고를 받은 피감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실을 통지 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 요구를 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신 설>

제19조의5(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제19조의4제2항에 따라 피감기관 소속 공직자가 감독기관 소속 공직자로부터 반복하여 부당한 요구를 받고 그 사실을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행동강령

제30조(교육) ①. ~ ②. (생략)
<신 설>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을 직접 운영하거나, 다른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책임관에게 알릴 때에는 별지 제6호의2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30조(교육)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이권개입·알선·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가 지켜야 할 사항
4.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직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

 -----있고, 실시한
교육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신 설>

제32조(행동강령의 운영 등) 시장은
이 규칙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따로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2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공무원
은 알선·청탁, 직무권한 등을 행
사한 부당행위, 금품등의 수수, 외
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
의 통지,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등에 대하여 행동강령 위반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동강
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제33조(현행 제32조와 같음)

현행	개정안													
[별지 제6호의2 서식] <u><신 설></u>	[별지 제6호의2 서식]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신고서 <table border="1"> <tr> <td>접수번호</td><td>접수일자</td><td>처리일자</td></tr> </table> <table border="1"> <tr> <td rowspan="2">신고자</td><td>성명</td><td>생년월일</td></tr> <tr> <td>소속</td><td>직위(직급)</td></tr> </table> <table border="1"> <tr> <td rowspan="2">요구자</td><td>성명</td><td>직위(직급)</td></tr> <tr> <td>소속</td><td></td></tr> </table> 요구받은 사항 부당한 요구로 판단한 이유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직급)	요구자	성명	직위(직급)	소속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직급)												
요구자	성명	직위(직급)												
	소속													

목포시 공고 제2019-337호

입 법 예 고

『목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 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1일

목 포 시 장

1. 조례(규칙)명 : 목포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2. 개정 이유

- 목포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주민공모사업)의 재정적 지원금액이 도시재생뉴딜사업 국토교통부지침과 상이하여 1건당 지원금액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증액하여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동 시행규칙 제8조(주민공모사업) 일부 개정
 - 주민공모사업 재정적지원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침 기준으로 개정
(현행 500만원 초과하지 않는 범위 → 1,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개정)

3. 개정조례안 : 별첨

4. 관계법령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 18조(주민 제안)
- 목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한 주민참여)

○ 동 조례 시행규칙 제8조(주민공모사업)

5. 입법예고 : 2019. 3. 11. ~ 4. 1.(21일간)

6.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목포시장(도시재생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처 : 58613, 목포시 수문로32, 목포시청(도시재생과)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061-270-3253), 직접방문 등

7.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http://www.mokpo.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목포시청 도시재생과(☎ 061-270-36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목포시 규칙 제 호

목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목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주민공모사업) 중 “주민공모사업(이하 “공모사업”-----
행정적 지원 및 500만원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를 “주민공모사업(이하 “공모사업” -----행정적 지원 및 1,000만원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로 개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주민공모사업) 주민공모사업(이하 “공모사업”이라 한다)은 조례 제15조에 따른 주민참여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 및 <u>500만원</u>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주민공모사업) ----- ----- ----- ----- ----- 행정적 지원 및 <u>1,000만원</u>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목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